

정비사업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1299
----------	------

2023. 12. 18.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제안경위

- 2023. 10. 12. 김용일 의원 발의 (2023. 10. 23. 회부)

2. 주문

- 정비사업이 완료된 조합의 해산 이후 잔여 재산을 조합원에게 인도하는 등의 청산절차를 고의로 지연하는 ‘미청산’ 조합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청산에 대한 세부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건의함

3. 제안이유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분양받은 자에게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여 조합의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인도하는 등의 청산절차를 거쳐 현존 사무를 종결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시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민

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조합해산’ 이후 ‘청산절차’에 대한 세부 규정 미비와 청산업무의 관리·감독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음

- 이러한 행정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일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수령 하거나 채권의 추심이나 변제를 위해 남겨 둔 유보금 등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미청산’ 문제로 인한 서울시민의 재산상 손실 및 정신적 피해방지를 위하여 ▲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 청산인 선임 의무화 및 청산인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 ▲ 청산절차 추진에 있어 고의 지연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될 시 지방자치단체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건의함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 이 건의안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조합의 미청산 방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촉구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0월 12일 김용일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6조의2¹⁾에 따라

1) 도시정비법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① 조합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

조합장은 이전고시²⁾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총회의 의결로 조합이 해산되면 선정된 청산인은 도시정비법 제49조 및 「민법」 제87조³⁾에 따라 조합을 대표하여 청산 사무를 집행하게 됨.

-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일부 청산인의 경우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 및 상여금을 수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정비법 제49조⁴⁾에서 조합에 관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행정법(도시정비법)이 아닌 민사법이 적용되어 행정청이 아닌 법원이 청산 법인을 검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 결과 청산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집행기관(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내부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미해산(미청산) 조합은 총 167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간 미해산(미청산)된 조합은 17개소로 집계됨⁵⁾.

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 2) 도시정비법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3) 민법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1. 현존사무의 종결
 -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 3. 잔여재산의 인도
- ②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4) 도시정비법 제49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 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관리 강화로 주민권익 보호(서울시 보도자료, '23.10.24.)

< 미해산(미청산) 조합 현황 >

(2023.9.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계	1년 미만	1 ~ 3년	3 ~ 5년	5 ~ 10년	10 ~ 15년
합계 (비율)	167 (100%)	27 (16%)	68 (41%)	24 (14%)	31 (19%)	17 (10%)
미해산	24	9	5	1	6	3
미청산	143	18	63	23	25	14

※ 출처: 주택정책실 내부자료

- 주요 미해산(미청산) 사유는 ▲부당이득금 반환, 시공하자, 조합임원 채권·채무·횡령 등의 소송, 공사비 등 조합·조합원·시공사간 분쟁에 따른 해산지연과, ▲조합임원 사망·이전, 임원 해임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장기간 연락두절로 인한 정상적인 해산업무 불가 등 추진주체의 부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에 이 건의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도조례로 위임토록 하고, ▲청산인 선임 의무화, 청산인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청산절차의 고의적 지연 등 위법사항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발의되었음.

< 건의안의 주요내용 >

	건의내용	비고
첫째	조합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제86조의2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도조례로 위임	-
둘째	도시정비법 제86조의2에 청산인 선임 의무화, 청산인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	민법에 기(既)규정
셋째	위법사항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 제113조 제2항을 개정	’23.12.8. 본회의 의결 후 공포·시행 예정

-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행 도시정비법의 규정으로는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와 조합설립인가취소 사유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상위법령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거나 시·도 조례로의 위임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둘째, 청산인 선임 의무화, 청산인의 직무를 규정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은 별도의 조문으로 청산인 선임 의무와 청산인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신, 민법을 준용(도시정비법 제49조, 각주4 참고)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청산인의 직무는 민법 제87조(각주3 참고)에서, 청산인의 선임 관련해서는 민법 제721조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 이를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토록 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셋째, 청산절차의 고의적 지연 등 위법사항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최근 법률개정⁶⁾을 통해 정비사업의 범위에 청산업무를 포함시키고 청산업무에 대한 법원의 검사·감독과는 별개로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외에도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므로 건의안의 목적은 일부 해소된 것으로 사료됨(붙임2. 참조).
- 참고로, 서울시는 금년 5월,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주된 원인이 민법 적용에 따른 민사적 관리에 있다고 보아 도시정비법 개정을 이미 건의한

6) 의안번호 제21-2585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23.12.8.)

바 있으며⁷⁾, 주요 내용은 민법의 규정을 행정법(도시정비법)에 편입하여 조합 해산(청산)에 관한 관리·감독 판단기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요약됨.

< 도시정비법 개정 건의(안) - 서울시 >

■ 조합 해산(청산) 세부 규정 마련(안)

○ 도시정비법 신설 (제86조의3 ~ 제86조의13, 제113조 제4항)

- 조합의 사업시행부터 이전고시에 이르기까지 도시정비법에 세부 근거 규정을 두어 관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취지로 조합 해산·청산에 관하여 민법에서 행정법(도시정비법) 체계로 전환하여 법적 일원화 도모
- 조합의 해산 청산에 관하여 시장·군수등에게도 검사, 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청의 적극적 관리·감독 체계 마련

○ 도시정비법 개정 (제86조의2 제3항 및 제4항)

-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 의결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 판단 기준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과 그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 취소 시 조합 해산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 조합설립 인가 취소 후 해산에 따른 청산인 선임의 의무화하여 청산 지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및 민원 등의 사전 예방

※ 출처: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6725('23.5.4.)

○ 종합하면, 이 건의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을 시·도조례로 위임토록 하고, ▲청산인 선임 의무화, 청산인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며, ▲청산절차의 고의적 지연 등 위법사항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정부와 서울시에서도 관계법령 및 조례 개정⁸⁾⁹⁾, 일제조사 등을 통해 해산 및 청산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7) 주거정비과-6725호('23.5.4.)

8) 의안번호 제11-816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3.7.3.)

- 개정조례안은 조합 해산(청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유도하기 위하여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강조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청산금 미지급과 지속적인 경비 지출로 인한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조합 해산 및 청산을 유도하여 공공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가능케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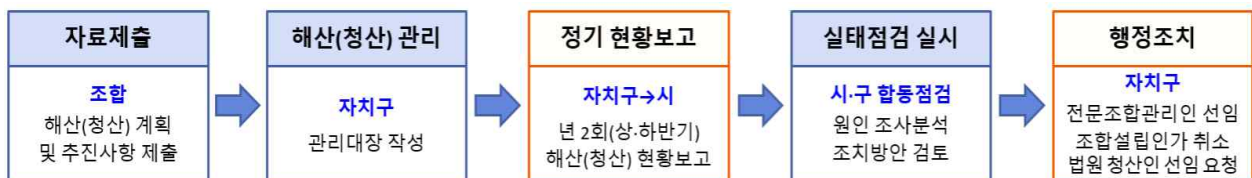
의안심사지원팀장 강대만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최지현	02-2180-8216

[붙임1] 관계법령(p.8)

[붙임2] 도시정비법 개정사항 - '23.12.8. 국회 본회의 의결(p.12)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를 ▲조합장 또는 청산인이 공공지원자에게 6개월마다 제출토록 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청산금 미지급, 지속적인 경비 지출 등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조합 해산 및 청산을 유도하여 공공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가능케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9) 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6개월마다 해산계획 관리(서울시 보도자료, '23.7.1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① 조합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해산하는 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6. 10.]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① 시장·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지원”이라 한다)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신탁업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지원하는 시장·군수등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지원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지원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으로 한정한다)
3.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 방법 등
4.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이주 거부에 따른 협의 대책을 포함한다) 수립
5. 관리처분계획 수립

6.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등은 위탁지원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지원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군수등에게 있다.

④ 공공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추진위원회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공공지원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시공사 선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

1. 조합이 제25조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⑧ 제7항제1호의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2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해당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개시결정 및 고시
3.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
4.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인가(신고수리)
5.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74조·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7. 법 제79조제4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승인
8.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고시
9.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지정 및 고시

②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7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명령 또는 업무 조사의 내용
2. 법 제1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3.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4.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 구성 및 현장조사 결과 내용

③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계획과 추진사항을 매 반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4.>

④ 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같은 규칙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조합원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31, 2022.12.30>

1.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구청장을 말한다.
2. “위탁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설계도서”란 해당 목적물의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4. 삭제 <2023.3.27.>

제86조(자료의 제출) ① 추진위원장, 조합장 또는 청산인은 구청장의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지원자(위탁지원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2023.3.27., 2023.7.24.>

1.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시공자·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 선정계획과 계약에 관한 사항
3. 법 제87조에 따른 권리의 확정, 법 제88조에 따른 등기 절차,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 등의 징수 및 지급에 관한 계획 및 추진사항
4.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 해산 계획 및 추진사항(다만, 조합이 해산된 경우 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합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6개월마다 제1항제4호 관련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청산인이 제출한다. <신설 2023.7.24.>

■ (의안번호 212585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일부 발췌 - 2024년 하반기 시행 예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3. (생략)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u>청산절차</u> 15. ~ 18. (생략) ② ~ ⑥ (생략)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 ----- ----- 1. ~ 13. (현행과 같음) 14. ----- <u>청산절차</u>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15. ~ 1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86조의2(조합의 해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u>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u>정비사업의</u> 원활한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정비사업(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청산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u> -----

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③ (생략)

제113조(감독) ①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군수등은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3조(감독) ① 정비사업(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청산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이-----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